

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

I . 추경예산개요

1. 세 입

-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04억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하며,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〉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년도					증감률	
	예산		추경예산	증감			
	당초	기정		당초	기정	당초	기정
합 계	20,402,003	20,402,003	20,402,003	-	-	-	-
세외수입	17,283,783	17,283,783	17,283,783	-	-	-	-
경상적	1,258,149	1,258,149	1,258,149	-	-	-	-
임시적	16,011,480	16,011,480	16,011,480	-	-	-	-
변상금	14,154	14,154	14,154	-	-	-	-
보조금	3,089,597	3,089,597	3,089,597	-	-	-	-
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	28,623	28,623	28,623	-	-	-	-

2. 세 출

-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2,414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1,473억 6천만원 대비 2.27% 증액(941억 5백만원)된 수준이며,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〉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년도					증감률		
	예산		추경예산	증감		당초	기정	
	당초	기정		당초	기정			
합 계	4,147,360,593	4,147,360,593	4,241,465,593	94,105,000	94,105,000	2.27%	2.27%	
행정관리	소 계	4,147,360,593	4,147,360,593	4,241,465,593	94,105,000	94,105,000	2.27%	2.27%
	행정운영경비	154,864,002	154,864,002	154,864,002	-	-	-	-
	재무활동	9,215,482	9,215,482	9,215,482	-	-	-	-
	사업비	3,983,281,109	3,983,281,109	4,077,386,109	94,105,000	94,105,000	2.27%	2.27%

○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세부사업별	2022년 예산		추경예산	당초예산대비			
	당초	기정		증감		비율	
				당초	기정	당초	기정
합 계	3,812,308,120	3,812,308,120	3,906,413,120	94,105,000	94,105,000	2.41%	2.41%
조정교부금	3,812,308,120	3,812,308,120	3,906,413,120	94,105,000	94,105,000	2.41%	2.41%

II. 검토의견

-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건으로 “조정교부금”사업에 941억 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.

가. 조정교부금

-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“조정교부금”은 기정 예산 (3조 8,123억 8백만원) 대비 941억 5백만원(2.41%)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
계	3,906,413,120	3,812,308,120	94,105,000
조 정 교 부 금	3,906,413,120	3,812,308,120	94,105,000

※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,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.

-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1년도 조정교부금 예·결산차액분(1조 2,377억원)중 일부를 금번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.
- 행정국은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1년 조정교부금 예·결산차액 정산 예정분 중 코로나 19 관련 국비(2.21, 추경안 의결)·시비 보조사업의 매칭 구비 및 자치구 발굴 민생대책(화물자동차 운송업 지원)의 재원 지원을 위해 총 941억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.

- 결산검사 완료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자치구가 코로나19확진자 폭증 및 장기화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하고, 민생대책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결산확정 전 선교부하려는 것임.

[국비·시비 매칭사업]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매칭비율	계	국비	시비	구비
코로나19 생활지원비	국 : 시 : 구 50:33.3:16.7	504,346,000	252,173,000	167,947,218	84,225,782
어린이집 운영지원	시 : 구 5:5	1,108,324	-	554,162	554,162
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 (장애인 활동지원 사업)	국 : 시 : 구 50:35:15(평균)	806,400	403,200	272,624	130,576

- ※ 코로나19 생활지원비 : 2022년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통지(질병관리청-22.2.23)
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명 :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- 기준교보율 : 국비 50%, 지방비 50% - 소요예산: 1조 1,414억 7천 3백만원
--

- ※ 어린이집 운영지원 :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지원(2개월-자체재원 :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)
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명 : 어린이집 운영지원(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) - 기본보육료(만3-5세) : 450,240천원(280,000원×1,608명)*2개월 - 차액보육료(만3세) : 43,110천원(191,600원×225명)*2개월 - 차액보육료(만4-5세) : 60,812천원(171,300원×355명)*2개월
--

- ※ 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 :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변경 안내(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22.2.28)
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명 :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- 지원대상 : 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- 지원내용 : 최대336천원 지원금 지급(일 48천원×격리기간 7일기준) - 지원기간 : 22.2.21~예산범위 내

[자치구 자체사업]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소요예산	대상자수	지원액(인당)
화물운수종사자 지원	17,740,400	44,351	400

※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: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-구 공동추진 민생대책 의견 수렴결과(화물운수종사자 지원 : 용달, 개별, 전액시비)

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수렴 결과 : 1개안 가결 - 지원대상: 화물운수종사자 지원(용달,개별) - 소요예산: 총17,740백만원(인당 40만원) - 재원분담: 전액시비

〈'21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〉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예산액(A)	결산액(B)	결산차액(B-A)
조정교부금(C×22.6%)	32,785	45,162	12,377
계(C=A+B)	145,066	199,831	54,765
보통세(A)	143,950	198,167	54,217
취 득 세	50,589	80,100	29,511
주 민 세	6,011	6,386	375
자동차세	11,862	11,641	△221
레 저 세	427	44	△383
담배소비세	5,802	5,942	140
지방소비세	17,294	19,780	2,486
지방소득세	51,964	74,273	22,309
지난연도 보통세(B)	1,116	1,664	548
취 득 세	63	243	180
주 민 세	51	54	3
자동차세	706	621	△85
지방소득세	296	746	450

1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,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

2)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%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

- 행정국의 조정교부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, 관련 조례(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)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, 예산 결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예산계상)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〈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〉

구 분	'22년 당초예산	'22년 1차 추경예산	증가액
합 계	38,123	39,064	941
일반조정교부금	34,311	35,252	941
총 로 구	620	634	14
중 구	138	150	13
용 산 구	722	744	22
성 동 구	1,144	1,176	32
광 진 구	1,403	1,437	35
동 대 문 구	1,779	1,816	37
중 랑 구	1,905	1,946	41
성 북 구	2,172	2,215	43
강 북 구	1,967	2,002	34
도 봉 구	1,904	1,943	39
노 원 구	2,550	2,605	55
은 평 구	2,130	2,180	50
서 대 문 구	1,483	1,509	26
마 포 구	1,067	1,109	42
양 천 구	1,537	1,592	54
강 서 구	1,911	1,963	51
구 로 구	1,823	1,867	45
금 천 구	1,337	1,362	26
영 등 포 구	925	968	45

동작구	1,492	1,536	43
관악구	2,105	2,163	58
서초구	68	78	10
강남구	-	-	0
송파구	540	610	70
강동구	1,589	1,645	56
특별조정교부금	3,812	3,812	-

- 또한, 2021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(105.6%)가 이미 5.6%를 초과하였고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(105.6%)시 5.6%를 초과하는 바,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(보통세의 21%~22.6%)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,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〈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〉

구 분	'22년도 배분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	'22년도 배분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(A)	'22년도 1차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(B)	증감 (B-A)
강남구 포함	74.4%	104.7%	105.6%	0.9%p
강남구 제외	69.1%	101.2%	102.1%	0.9%p

- 아울러,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결산 차액('17년 4,453억원→ '18년 4,027억원→ '19년 4,194억원→ '20년 7,685억원→ '21년 1조 2,377억원)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, 과도한 결산차액(1조 2,377억원)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,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〈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〉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예산액 (A)	결산액 (B)	결산차액 (B-A)	비 고
'17년도	26,444	30,897	4,453	◦'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
'18년도	29,214	33,241	4,027	◦'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
'19년도	31,099	35,293	4,194	◦'20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
'20년도	32,869	40,553	7,685	◦'21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
'21년도	32,785	45,162 (가결산)	12,377 (예정)	◦'22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

○ 한편, 행정국은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자치구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하고,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가산교부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으나,

- 지난 제303회 정례회시 개선·보강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, 측정단위와 새롭게 산정된 고정비용, 단위비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되는 만큼 적절한 조정교부금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바, 이에 대한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